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13 선고 2020가단1087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기훈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식

담당변호사 이대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정하

변론 종결2022. 9. 29.

판결 선고2022. 10. 13.

주 문

1. 소외 망 C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소외 D(E생)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소외 F(G생), H(I생)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소외 망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은 94,708,9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708,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¹⁾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0. 5. 18. 소외 망 C(2020. 1.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망인이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8576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4. '망인은 원고에게 47,752,893원 및 그 중 39,9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22. 3. 8. 현재 미회수 원금 31,600,000원을 비롯하여 연체이자 등을 합한 원리금 합계가 94,708,932원에 이른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망인은 2019. 10. 7. 사촌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J 임야 4234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망인은 2020. 1. 13.경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 F, H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0.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느단381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20. 4. 8.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위 심판서에 첨부된 망인의 상속재산목록에는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합계 200,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만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망인의 채무로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31,600,000원과 고양시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25,893,67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재산관계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D, F, H은 망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선의 항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으로 망인과 피고의 형 소외 K가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9. 10. 초순경 사촌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고양시 등을 권리자로 한 3건의 압류 외에 다른 채무관계가 없었고, 망인도 이외에 다른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에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 원과 위 각 압류해제금 합계 2,336,590원을 공제하여 잔금을 77,664,410원으로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나머지 잔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즉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매목적물이 조상의 선영이 있는 선산이며,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피고의 친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6호증,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의 친형인 K와 이 사건 임야를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 10.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336,590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117,663,410원을 2019. 10. 15.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40,000,000원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종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9. 10. 8. 합계 2,336,59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압류를 해제한 사실, 피고가 2019. 10. 15. 정기에탁금 80,000,000원을 해지하여 그 중 53,000,000원을 망인의 딸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9. 10. 15. 10,000,000원권

2매, 1,000,000원권 4매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망인은 이를 소외 L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외 L이 2019. 10. 21. 망인의 딸 F의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으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망인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77,000,000원이 망인의 딸 F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매도인 자신이 아닌 가족의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이나 위 자기앞수표의 이례적인 전달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오히려 그 사해성이 두드러지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망인과 피고는 사촌지간으로 비교적 가까운 친족관계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점이나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매매대금의 수액 및 그 지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도 망인의 어려운 경제사정(망인으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아 F에게 입금하였다는 소외 L은 당시 망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을 제12호증 참조)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관련한 이자가 발생하도록 하고, 망인이 1985년부터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으로서도 향후 원고 측의 별다른 법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새삼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D, F, H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D에게, 각 2/7지분에 관하여 F, H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²⁾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주위적 청구(원물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가액배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환

별지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사해행위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하는데,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취지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수량적 일부 청구로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되고,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도 원상회복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이므로 판단 순서를 정한 주위적, 예비적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살펴본다.

2)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건의 압류등기에 대한 압류해제금을 납부하여 2019. 10. 8. 위 각 압류등기가 해제되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2019. 10. 15. 지분이전등기)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